##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3 발의연월일: 2024. 6. 7.

발 의 자:유상범·조배숙·박충권

조정훈 • 정점식 • 구자근

이철규 · 박형수 · 임종득

배준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지의 조성과 관리,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에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전용의 사유를 법률로 한정하고 있음(현행법 제23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강원특별법'이라 함)이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道)는 전국 최초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시행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음.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특별자치도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의 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위제한 및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제도임.

산림이용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강원특별법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 나, 초지 전용에 대한 규제를 풀지 못하여 각종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실효적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초지 전용을 허용하는 사유에 강원특별법에 따라 산 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강 원특별자치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각종 산업의 발전을 이루 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 23조제1항제9호 신설). 법률 제 호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제35조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 는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이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현행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	과 같음)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에 따
	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9 <u>.</u>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	<u>10.</u> (현행 제9호와 같음)
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	
도지사는 제외한다)이 특별시	
장・광역시장・도지사와의 협	
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	
는 경우 또는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가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② ~ ⑭ (생 략)	② ~ ⑭ (현행과 같음)